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18 선고 2019가단340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 유한회사

2. D

변론 종결 2019. 6. 4

판결 선고 2019. 6. 18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,820,424원 및 그 중 197,844,752원에 대하여 2018.11. 12.부터 2019. 2. 14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C 유한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는 E 주식회사, F 주식회사(이하 통틀어 'E 등'이라 한다)에 대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. 8. 31. 원고와 사이에,피보험자를 E 등으로, 보험가입금액을 248,400,000원으로, 보험기간을 2017. 9. 1.부터 2022. 8. 31.까지로 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보험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원고가 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,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,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그 다음날부터 연 9%이다,

라. 피고 회사가 E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고, 원고는 E 등으로부터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G조합에 2018 . 10. 12. 보험금197,844,752원을 지급하였다.

마. 2018. 11. 11.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975,672원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, 피고 D 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, 820, 424원(= 원금197, 844, 752^ + 지연손해금 975, 672원)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2018. 11. 1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. 2. 14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9 . 5. 31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제1항,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) 저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

전의 것)에 정한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준구